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9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 6. 23. 시행)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정보공개청구 서식 변경,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기관의 의무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안 제3조)

나. 정보공개청구 서식 변경(안 제7조)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다.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수를 축소(3명→2명) (안 제12조)

라. 정보공개 업무처리 시 청구인에 대한 안내 추가

- 비공개 결정 시,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안내(안 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미개최 사유 문서 통지(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기간 : 2021. 7. 7. ~ 2021. 7. 27. [2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선의견 반영 완료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추가(제12조제4항)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총무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8조제5항 중 "그 이유와 불복"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으로, "통지"를 **"문서로 통지"**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

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일비와 여비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로 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의신청은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서 명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김 희 태
	팀장 직위·성명	총무팀장 이 광 호
	담당자 성명·전화	이 진 희 (790-54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 ③ (생략)	제3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개대상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의 청구방법) ① ---------- ---------- ---------- ----------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1.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
3.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 ~ ④ (생 략)	제8조(공개여부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개대상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 문서로 통지**------.
⑥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의신청) ① ~ ④ (생 략)	제11조(이의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개대상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2조(심의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을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양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일자리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단서 삭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심의회 기능) ----------.
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이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1.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 체계적 ·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 · 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12. 23.]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시행일 : 2021. 12. 23.]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 8. 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부칙 <제17690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 제2호, 제13조제5항, 제18조제2항 단서,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3항 · 제4항, 제12조제1항 · 제3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민원으로 처리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비공개 세부 기준 점검 및 개선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